

제 562 호  
1976. 6. 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 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 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5-6090

# 시 보

## 차 례

---

◎규 칙	
제 1594 호 :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3
◎훈 령	
제 448 호 :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중개정	3
제 449 호 : 서울특별시보건소위임전결규정중개정	45
제 450 호 : 서울특별시구및출장소위임전결규정중개정	53
제 451 호 : 서울특별시축산물위생검사소위임전결규정	57
◎고 시	
제 137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신설일부변경결정및 지적승인	62
제 138 호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결정및지적승인	62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139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및 하수도 ) 결정 ,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	63
제 140 호 : 도시계획용도지역및 용도지구변경지적승인 .....	64
제 141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광장 ) 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65
제 142 호 : 1976 년도 제 2 회서울 특별시세입세출추가..... 경정예 산고시 .....	66
제 143 호 : 도시 계획사업 ( 재개발사업 ) 시행허가 .....	67
◎공            고 .....	
제 139 호 :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	67
제 140 호 :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	68
제 141 호 : 자동차등록검인설시공고 .....	68
◎사            령 .....	72

**규 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1976년 6월 30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594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문화공보실'란 제 11호 다음에 제 12호 내지 제 15호를 '아동과'란 제 5호 다음에 제 6호를 '사회과'란 제 4호 다음에 제 5호내지 제 7호를 '연료과'란 제 18호 다음에 제 19호를 '농축과'란 제 15호 다음에 제 16호를 '시설관리과'란 제 18호 다음에 제 19호를 '급수과'란 제 7호 다음에 제 8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인사과란 다음에 '행정과'란을 보건의예방과란 다음에 '의약과'란을 사회과란 다음에 '청소 1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삼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 서울특별시훈령제 448호

서울특별시위임전결  
규정 중 개정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2. 문화공보실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중 3. 기획관리관 라. 통계담당관 중 통계조사계란 다음에 자료처리계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다. 예산담당관란중 예산 2계란 다음에 외자관리계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예산총관계란중 3을 삭제하며 다. 시정개발담당관란중 전자계산란을 삭제한다.  
별표중 6. 내무국 가. 총무과 서무계 2. 인사란중 2. 와 라. 시민과 민원처리계란 및 마. 새마을지도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중 7. 재무국 가 세정과 세정계 1. 세정란중 '3' 및 '4'

111  
-4

( 별 지 )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위임구분	수임기관	근 거 및 직 용 법 규
문화공보실	12. 불교재산 목록 신고	내부위임	구, 출장소장	불교재산관리법제 14조 동시행령제 7조, 3조
"	13. 불교재산 증감 이동 신고	"	"	15조 " 8조
"	14. 불교재산 예산, 결산의 신고	"	"	15조 " 9조
"	15. 불교재산 처분허가	"	"	11조 " 6조
아 동 과	6. 요보호 아동보호의뢰	"	"	아동복지법제 8 조 동시행령제 9 조, 동시행규칙 제 8 조
사 회 과	5. 사설직업안내소의 지도감독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7 조 제 5 항
"	6. 사설직업안내소 행정처분	"	"	직업안정법 제 27 조
"	7. 구인 구직의 제척 및 구직의 알선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7 조 제 5 항
연 로 과	19. 연탄사용기기 사무관리	"	"	연관리법제 26 조, 동시행령제 27 조 4 호
농 축 과	16. 가축자가사육 증명	권한위임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 조
시설관리과	19. 공공용지 용도폐지	내부위임	"	국유재산법제 20 조, 시재무회계규칙 제 124 조 제 1 항

77-4 제 562 호  
시  
보  
1976.6.30

실과명	위임사무명	위임구분	수임기관	근거및적용법규
급수과	8. 수압 및 배급수 조절	내부위임	수원지사사무소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제 82조 (급수과) 2항 1호
행정과	1. 소개영업자 영업의 정지처분 2. 행정구역 명칭변경 증명원	” 권한위임	구, 출장소장 ”	소개영업법 제 6조 민원처리규정 제 2조 (코드번호 나-12-24)
의약과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의원 개설허가 2. 종합병원, 병원, 한방의원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3.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 한 부속의료 기관의 개설허가 4.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 한 부속의료기관의 허가사항변경허가	내부위임 ” ” ”	보건소장 ” ” ”	의료법 제 30조 4항  의료법 제 31조 1항, 2항
청소 1과	1. 오물처리법 (쓰레기처리 업, 폐유등 처리업) 허가 신청	권한위임	구, 출장소장	오물청소법제 13조 서울특별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제 11조 오 물청소법시행규칙 제 17 조

제 562 호 시 보 1976.6.30 77-5

11  
- 5

0671

303

87

를 별지와 같이 하고, '과정계'를 '과정 1계', '과정 2계'로 '세정세외수입'을 '1. 부과징수'로 하며, 동란중 7. 및 8. 을 각각 삭제하고 '9'를 '7'로 하며 종전의 과정계란 다음에 세외수입계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나. 세무조사과 각계공동 세무조사란 3. 재조사청구 처리란중 다. 를 별지와 같이 하며 동란중 라. 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5'의 결재권자 '국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조사 2계란 다음에 법인계란과 마. 영선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중 8. 보건사회국 나. 보건예방과 간호사업계 '1. 간호보건사업'을 '1. 간호사업'으로 하고, 동란중 '2' 내지 '4'와 '8' 및 '9'를 각각 삭제하며, '5' 내지 '7'을 '2' 내지 '4'로, '10' 내지 '12'를 '5' 내지 '7'로 하고,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간호사업계'란 다음에 '가족계획'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마약계란을 삭제한다. 다. 의약과 의무계 3. 의무행정란중 '4'의 결재권자 '국장'을 '과장'으로

하고 동란중 '5' 및 '7'을 각각 삭제하며, '6'을 '5'로 하고 의무계 1. 의약업자 단속란중 '3'의 결재권자 '국장'을 '과장'으로 하며, 3. 약무행정란중 '3' 및 '4'와 4.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란 및 5. 독극물관리란을 각각 삭제하고, 약무계란 다음에 마약계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라. 사회과 사회계 7.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교부란을 삭제하고 마. 부녀과 부녀보호계 2. 부녀보호시설업무 관리란중 '6'을 별지와 같이 하며 3. 윤락여성 선도란중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4. 가정이탈 예방운동란을 별지와 같이 하며, 6. '수도행정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운영'을 '수도행정 자문위원회 시민복지분과위원회운영'으로 하고 7. 양곡관리란을 삭제하며 부녀지도계란중 4. 주부교실 운영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5. 어머니솜씨 전시 및 각종행사란중 2. 의 결재권자 '부시장'을 '국장'으로, 6. 시민아파트 생활지도란중 1. 의 결재권자 '국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표중 9. 환경국 나. 청소 2 과 업무  
 제란중 '6' 내지 '11'을 삭제하고  
 업무제란 다음에 위생설비제란을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중 10. 산업국 가. 상정과 상정계  
 1. 시장관리란중 '2'의 결재권자  
 '부시장'을 '국장'으로 하고  
 '8' 및 '15' 내지 '20'을 각각  
 삭제하며 '9' 내지 '14'를 '8'  
 내지 '13'으로 하고 소비자보호제  
 란에 '6' 및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계량계 1. 계량기검  
 정란중 '1'의 결재권자 '과장'을  
 '계장'으로 4. '계량기증명업등록  
 '을 '수입계량기실수요자증명서발  
 급'으로 하고 '5' 및 '6'을  
 각각 삭제한다. 나. 공업과 공정계  
 1. 공업행정란중 '5'의 결재권자  
 '과장'을 '국장'으로 하고, 동란  
 에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7. 수출진흥란중 '6'과 8. 해외재  
 산반입란 및 9. 광업서사허가란을  
 각각 삭제하고, 표준계 1. 품질관리  
 란에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  
 며 기전계 1. 기전관리란중 '2'  
 를 삭제하고 '3'을 '2'로 하여  
 별지와 같이하고, 화섬계 1. 화섬관

리란중 '2'를 삭제하며 '3'  
 을 '2'로 하여 별지와 같이한다.  
 나. 연료과 열관리계 2. 전기행정  
 란중 '10'을 삭제하고 라. 도시  
 가스과 고압가스계 1. 섬유제품  
 판매업 신고를 별지와 같이하며  
 마. '농정과'를 '농축과'로 한  
 다.

별표에 11의 2를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별표중 12. '도시계획국'을 '도시  
 정비국'으로 하고 '다' 및  
 '라'를 '라' 및 '마'로 하며,  
 '다'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라 '구획정리 1과, 구획정리 2과'  
 를 구획정리과'로 하며 마 '건  
 축과'를 '건축지도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중 13. 주택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중 14. 관광운수국, 가. 운수 1 과  
 란을 별지와 같이하고, 다. 운수  
 3과 안전계 '3. 민원처리란중  
 '1'의 결재권자 '과장'을  
 '계장'으로 하며 지도 2 계란 다  
 음에 등록계란을 별지와 같이 신  
 설하고, 라. 관광과 관광진흥계

3. 통역안내원란중 '1'을 삭제하고 '2'를 '1'로 하며, 관광사업계 2. 관광호텔 관리란중 '5'를 삭제한다.

별표중 15. 건설국 가. 건설행정과 보상계 '1'의 협조처리란중 '예산담당관, 기획관리관, 회계과장'을 '예산담당관, 회계과장'으로, '2'의 협조처리란중 '재무국장'을 '예산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하고, '3'의 협조처리란중 '회계과장, 재무국장'을 삭제하며, 나. 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계 1. 시설물 유지관리란중 '6' '8' 및 '9'를 각각 삭제하고, '7'을 '6'으로, '10'내지 '12'를 '7'내지 '9'로 하며 종전의 '11'의 결재권자 '과장'을 '국장'으로, 종전의 '12'의 결재권자 '계제장'을 '과장'으로

하고, 공지관리계 1. 공지관리란중 '12'와 라. 도로보수와 도로관리계 2. 굴착사항란 및 마. 하수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중 16. 수도국 가. 업무과 서무계 1. 인사란중 '1'을 삭제하고 '2'내지 '6'을 '1'내지 '5'로 하며 나. 경리과 경리계 3. 현재표란중 '2'의 결재권자 '과장'을 '시장'으로 하고, '4'의 결재권자 '국장'을 '시장'으로 하고 '5' 및 '6'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며, 다. 기전과 기계계 1. 차량관리란에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마. 급수와 급수장치계 1. 공사란중 '1'을 별지와 같이하며 '3'을 삭제하고 '4' 및 '5'를 각각 '3' 및 '4'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2. 문화공보실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공보계	1. 공보행정	1. 문공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2. 월례공보지침 시달			○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공 보 계	2. 공연 행정	1. 공연장 설치허가					○	
		2. 공연장허가사항 변경허가			○			
		3. 공연장 행정 처분					○	
		4. 광고영화제작신고 검열			○			
		5. 대한뉴스 및 문화영화 배포			○			
	3. 영사기사 면허시험	1. 영사기사 면허시험 계획수립					○	
		2. 영사기사 면허증 교부		○				
	4. 안보 및 산업시찰	1. 안보 및 산업시찰 종합계획						○
		2. 반공행사 및 시국강연					○	
5. 시민정서 순화	1. 시민위안행사종합계획						○	
	2. 전전가요보급 종합계획						○	
	3. 영화교실 운영			○				
6. 시보발간	1. 시보발간			○				
7. 사업소 지도감독	1. 시민회관,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관현악단 지도감독			○				
8. 사용료 승인	1. 남산야외음악당 유료사용 신청					○		
9. 사회단체	1. 사회단체등록(신원조회)					○		
보 도 계	1. 보도활동	1. 시정에 관한 보도 및 주간 보도분석		○				
		2. 시정홍보 영화제작					○	
		3. 시정정규방송 운영방침결정					○	
		4. 신문구독 계획					○	
		5. 시정홍보판 전시						○
		6. 시정화보 편집발간			○			
		7. 방송모니터실 운영			○			
		8. 기자실 운영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9. 시정홍보관 운영 10. 서울발전상 사진전 개최 방침결정			○			○
문 화 계	1. 종무 행정  2. 공연자 지도감독 3. 음반 판매 업소지도감독 4. 출판사 인쇄소등록 5. 향토문화 보급 6. 기타문화 예술행사	1. 불교단체재산처분(대여) 허가 2. 종교단체 및 사찰지도 1. 각본등 심사 2. 공연자 지도 1. 부정음반 단속 2. 음반판매업소 지도 1.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 1. 향토문화 보급 보호 2. 민속예술 발굴		○	○	○	○	○
문 화 재 관 리 계	1. 문화재 보호 및 관리보수	1. 서울성곽복원 계획수립 및 복원 2. 문화재 보수계획 수립 3. 매장문화재 발굴 4. 문화재 매매업소허가 및 취소 5. 문화재 관리 6. 일반동산문화재 등록 및 명의 변경					○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7. 일반동산문화재 감정의뢰 8. 무형문화재 관리 9. 문화재 매매업소 이권허가 10. 문화재 매매업소 휴업 폐업 승인			○				
다. 예산담당관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외자관리계	외 자 업 무	1. 차관계약 2. 통관서류 작성 3. 지불보증금발급을 위한 절차 시행 4. 외화사용 승인신청 및 기술검토 5. 한국은행외화사용·한도액 확인 6. 외자구매 의뢰 7. 은행지보류및상환금지출 8. 공무원해외여행·외화 사용 9. 외자수송 계획 및 계약 업무 추진			○			○	

3. 기획관리관 라. 통계 담당관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자 료 처 리 제	1. 이.디. 피.에스 화 계획	1. 행정업무 이.디.피.에 스화 개발계획 수립 2. 행정업무의 이.디.피. 에스화 시행						○	
	2. 이.디. 피.에스 사무처리	1. 이.디.피.에스에 관한 사무처리				○			
	3. 이.디. 피.에스 요원교육 훈 련	1. 이.디.피.에스 신규요 원의 선발 및 훈련 2. 기타 이.디.피.에스 요원 훈련					○		
6. 내 무 국 가. 총 무 과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서무계	2. 인 사	2. 본청고용원 및 잡급직 원의 임용, 교육 및 상벌				○			

라.시 민 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민원처리계	1. 민원처리	1. 국제 혼인신고 2. 재직, 퇴직, 경력증명 3. 이미용사면허증 교부 4. 이미용사면허증 서환교부 5. 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 6. 간호보조원면허증교부 (진달) 7. 안마사 자격증 교부 8. 안마사 자격증 서환교부 및 재교부 9. 약사면허증 교부 (진달) 10.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침구 사) 자격증 서환교부 및 재 교부 11. 공사기신고 증명 12. 납품실적 증명 13. 원천과세 제증명 14. 공사준공 증명 15. 공사도급 실적증명 16. 공연자등록증 재교부 17. 중기조종 면허 18. 중기조종 면허증 재교부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19 . 중기조종 면허증 기재사 항 변경	○					
		20 . 건설기술자 신상변동신고	○					
		21 . 건설면허수첩 기재사항 변 경	○					
		22 . 타관할 관청에 의한 실지 검사	○					
		23 . 외국인 토지관계허가 ( 200 평미만의 토지권리 취득 )					○	
		24 .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한 경유문서			○			
		25 . 외국인토지에 관한 권리취 득 변경허가					○	
		26 . 진정서 처리			○			
		27 . 공연신고	○					
		28 . 관람료인가 ( 상설극장 )	○					
		29 . 공연자등록 신청			○			
		30 . 공연자등록증 재교부	○					
		31 . 공연자등록사항 변경신청	○					
		32 . 영사가사면허증 재교부 신청	○					
		33 . 특혜관세원산지 증명	○					
		34 . 중매인 허가신청	○					
		35 . 매매참가인승인 신청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36 . 해외재산반입 추천				○		
		37 . 조림용 종묘판매업 등록 신청	○					
		38 . 자가생산소요원자재 증명		○				
		39 . 건축사 사무소 등록확인 원	○					
		40 . 건축허가 및 건축물 준 공검사 사실증명	○					
		41 . 계량기 검정필 증명	○					
		42 . 통역안내원면허증 교부	○					
		43 . 통역안내원면허 갱신	○					
		44 .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교부	○					
		45 . 관광호텔종업원 합격증 교부	○					
		46 . 관광호텔종업원 등록증 교부	○					
		47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 록 갱신	○					
		48 . 국가기술자격수첩 재교부	○					
		49 . 국가기술자격필기시험 합 격확인 신청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50 . 건설기술자 면허증 (수첩) 재교부	○					
		51 . 의약품등 제조업허가신청	○					
		52 . 의약품등 제조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	○					
		53 . 의약품등 제조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소재지)	○					
		54 . 독극물 제조업 등록신청	○					
		55 . 독극물판매지정 신청	○					
		56 . 독극물 제조업의 휴업, 폐 업, 재개업신청	○					
		57 . 독극물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					
		58 . 국내여행 알선업 허가증 재교부	○					
		59 . 관광호텔업 등록증 재교부 갱신신청	○					
		60 .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개서신청 (관광호텔제외)	○					
		61 . 관광시설 확인증명	○					

마 . 새마을지도과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새마을 계획계	1. 계획수립	1. 새마을중요계획수립 2. 성금품활용계획수립				○		○
	2. 실적심사	1. 새마을필승사업심사 2. 새마을실적통계 및 분석				○		○
	3. 협의회운영	1. 각종 새마을 협의회					○	
	4. 기 타	1. 새마을 상황실 관리		○				
새마을 지도계	1. 새마을지 도자 관리	1. 새마을 지도자 육성 2. 새마을 장학제 운영				○		○
	2. 마을금고 육성	1. 지역 및 직장금고 육성계 획 2. 시청 직장금고 육성				○		○
	3. 새마을사업 지도	1. 우수마을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 2. 새마을가꾸기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					○	○
	4. 기 타	1. 새마을날 행사지도 2. 새마을 표창					○	○
새마을 교육계	1. 새마을교육	1. 새마을교육계획 수립 2. 대상자 선정 3. 새마을교재작성			○			○
	2. 새마을홍보	1. 홍보계획수립및홍보실시 2. 새마을사업기록 보존				○		

7. 재 무 국									
가. 세 징 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세 정 계	1. 세 정	3. 세무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진달 4. 세무공무원의 교육에 관 한 사항				○			
세 외 수입 계	1. 세외수입 총 관	1. 세외수입의 총괄보고 2. 세외수입에 관한 계획수립 및 목표액 배시 3. 세외수입부과징수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세외수입부과징수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합의				○	○	○	○
나. 세 무 조 사 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각 계 공통	세 무 조 사	3. 세조사 청구처리 다. 기각결정 라. 각하결정					○		

11  
18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법 인 계	세 무 조사	1. 자본금 5억 원 이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2. 관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3. 구출장소의 법인 조사 지도 감독 4. 직무위반자 처리			○	○		
마. 영 선 과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각 계 공통	1. 공사설계협 조	1. 공사설계 및 변경 설계 회사 가. 1건당 3,000 만 원 이상 나. 1건당 1,000 만 원 이상 다. 1건당 200 만 원 이상 라. 1건당 200 만 원 미만 2. 도급 공사의 중지, 해제 결정 및 공사 착수 기공·준공·공사 기간의 연기 결정 협 조				○	○	
	2. 설계검토의 회 협 조	1. 시비보조사업 설계검토 가. 1건당 500 만 원 이상 나. 1건당 500 만 원 미만			○			
	3. 보상설계의 회 협 조	1. 보상설계에 따른 산출설계의 회 가. 1건당 500 만 원 이상 나. 1건당 500 만 원 미만			○	○		

B . 보건 사회 국									
나 . 보건 예방 과									
결 재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간 호 사 업 계	1 . 간 호 사 업	8 . 간 호 보 조 원 자 격 시 험 관 리				○			
가 족 계 획 계	1 . 가 족 계 획 사 업	1 . 가 족 계 획 에 관 한 기 본 계 획 2 . 가 족 계 획 에 관 한 사 항				○			
	2 . 보 건 사 업	1 . 모 차 보 건 사 업 2 . 보 건 교 육 3 . 구 강 보 건 사 업				○ ○ ○			
다 . 의 약 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마 약 계	1 . 마 약 행 위 관 리	1 . 마 약 취 급 업 자 면 허 신 청 (진 달) 2 . 마 약 취 급 업 자 면 허 등 록 사 항 변 경 신 청 (진 달) 3 . 마 약 소 분 제 제 마 약 사 용 허 가 신 청 4 . 마 약 취 급 업 자 업 무 폐 지 등 의 신 고 서 (진 달)		○					
				○					
				○					
				○					

111  
/ 22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5 . 마약취급업자면허 유효기간 갱신 신청 6 . 마약수입허가공인증 발급신청 경유진달 및 마약수입 상황보고 7 . 마약양도승인 신청서 진달 8 . 한의 마약사용 허가																	
	2 . 마약및습관성사범단속	1 . 마약 및 습관성 사범사 전송치 2 . 마약취급자 행정처분 3 .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중 독자수용 처리																	
	3 . 마약행정	1 . 의료용 마약배정 2 . 수사정보비 지출																	
	4 . 습관성의약품 관리	1 . 습관성 의약품 취급자 허가 신청 (경유진달) 2 . 습관성의약품 취급자 지정서 3 . 습관성의약품 취급자 변경 신청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4 . 습 관 성 의 약 품 제 조 품 목 허 가 신 청			○			
		5 . 습 관 성 의 약 품 원 료 사 용 신 청		○				
		6 . 습 관 성 의 약 품 원 료 사 용 승 인 신 청		○				
		7 . 습 관 성 의 약 품 원 료 양 도 승 인 신 청			○			
		8 . 습 관 성 의 약 품 폐 업 산 고		○				
		9 . 습 관 성 의 약 품 사 고 발 생 신 고 서		○				
		10 . 습 관 성 의 약 품 판 매 허 가 갱 신 신 청			○			
		11 . 습 관 성 의 약 품 등 실 제 보 고			○			
		12 . 습 관 성 의 약 품 중 독 자 수 용 상 황 보 고			○			
		13 . 마 약 구 입 및 구 매 서 발 부			○			
		14 . 마 약 수 급 관 리			○			
		15 . 마 약 류 폐 기 허 가			○			
		16 . 원 료 마 약 사 용 에 대 한 입 회 입 검 상 황 보 고			○			
		17 . 습 관 성 의 약 품 판 매 허 가 신 청			○			

111/10

마. 부 녀 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부녀보호계	2. 부녀보호시설업무관리	6. 부녀직업보도 및 보호지도 시설의 설치 및 변경사항 보고			○				
	3. 운락여성선	2. 결 과 보 고			○				
	4. 가정복지사업	1. 계획수립 2. 가정문제상담 3. 썬미나 개최 4. 결과보고			○		○		
부녀지도계	4. 주부교실운영	1. 계획수립시달 2. 결과보고			○		○		
9. 환 경 국									
나. 청소 2 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위생설비계	1. 시설물관리	1. 오물청소법에 의한 번소개량 2. 분뇨탱크 용도 폐지 3. 분뇨탱크 유지관리			○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 분노처리업 허가	1. 처리업허가 2. 허가사항변경 3. 처리업정지 4. 허가취소				○			
	3. 분노처리업 의지도감독	1. 허가업자의 지도감독 2. 기타 지시사항			○ ○				
	4. 액상폐기물 정화조설치시 공청소업등록	1. 정화조 설계시공청소업등록 2. 등록사항 변경신고 3. 등록말소			○ ○	○			
	5. 등록업자의 지도감독	1. 등록업자의 지도감독 2. 기타 지지사항			○ ○				
	6. 공중변소	1.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공중변소 설치조정 3. 공용폐지 4. 지도감독				○ ○ ○			
10. 산 업 국 가. 상 정 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소비자보호 제	6. 내국수출업 허가 7. 특정외래품 관리	1. 허가 및 취소 2. 기재사항변경허가및 갱신 1. 특정외래품 판매허가 추천 2. 특정외래품 분양승인 3. 특정외래품 재고량 증명 4. 특정외래품 보고서 공람 5. 특정외래품 밀자승인 6. 특정외래품 사후관리			○ ○ ○ ○ ○ ○	○ ○ ○ ○ ○			

111  
/ 24

나. 공업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공정계	1. 공업행정	6. 제조공장설치신고 진달			○			
표준계	1. 품질관리	7. 광업에 관한 사항			○			
기전계	1. 기전관리	2. 수출용원자재소요량 증명 발급상황보고			○			
화섬계	1. 화섬관리	2. 수출용원자재소요량 증명 발급상황보고			○			
다. 도시가스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고 압 가스계	1. 석유제품 판매업허가 및각종신고	1. 기존주유소허가증일제교부 2. 신규허가 3. 조정명령 및 보고명령등 4. 판매업변경신고 승계신고 후 (폐) 업및재개업신고			○		○	

11  
25

11의 2 민방위국								
가. 민방위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담 당 자	계 과 장	국 장	부 사 장	시 장	협 조 처
관 리 계	1. 민방위협 의회운영	1. 민방위협의회의 개최 2. 민방위협의회의 간사회의						○ 계획담당관 예산담당관
	2. 행사관리	1. 각종행사계획수립 및 시행						○ "
	3. 민방위업 무 조정	1.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조정						○
	4. 병무관리	1. 병무비보조금 수령 2. 병무비결산						○ 지방병무청 ○ 지방병무청 예산담당관
계 획 계	1. 민방위 계획	1. 시계획수립 및 시행 2. 계획의 시달 3. 구계획의 승인 4. 기타계획의 수립 및시행						○
	2. 민방위업 무지도감독	1. 지도감독계획의 보고 2. 동향종합보고						○ ○
	3. 녹지사업 계획	1. 추진상황보고						○
	4. 피해종합 평가	1. 종합평가분석보고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5. 민방위업 무연구조사	1. 연구조사보고 2. 자료수집분석평가보고				○		
시설제	1. 민방위시 설계획수립	1. 민방위시설 기본계획 2. 민방위시설 세부계획 3. 기타 필요한 계획			○			○
	2. 민방위 시설	1. 기술지도 및 확인 2. 긴급복구시설 감독 3. 구 사업승인				○		
	3. 민방위 준비명령	1. 준비명령 집행확인 2. 준비명령에 따른 자료수집				○		
	4. 민방위 보상	1. 장애시설물 철거확인 2. 긴급조치에 따른 사용, 수용 변경, 제거확인 3. 손실발생시 규모금액확인 4. 민방위사태에 따른 응급조치				○		○
나. 운 영 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편성계	1. 민방위대 편성	1. 민방위대조직편성에 관한 중요방침결정 2. 민방위대 편제조정 3. 민방위대 개편결과조치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4. 지역민방위대의 개편조정 5.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지정 승인 6. 직장민방위대의 해체명령 7. 연합직장민방위내장의지정				○	○	
	2. 민방위대 자원관리	1. 자원관리의계획 및 통제 2. 자원관리 정기보고 3. 자원관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운영계	1. 민방위대의 동원 및 운영	1. 민방위대 동원에 관한사항 2. 관내민방위대의 동원 협조요청 3. 민방위대 신고망 운영관리 4. 민방위와 관련된 주민 통제 및 소산과 수송통제 5. 민방위대대원동원에 대한 응급조치명령 및 손실보상 협의 6. 민방위사태발생에 따른 상이자 가료병원 지정 7. 화생방요원의 임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교 육 훈 련 계	1. 민방위 교육훈련	1.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수립 2. 민방위교육훈련계획시달 3. 민방위홍보 및 계몽에 관한 사항 4. 민방위교육감독 및 보고			○		○	○

12. 도시정비국 다. 도시정비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도시정 비 1 계	1.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1. 재개발사업시행 허가 2.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 3.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4. 도시계획법제 12 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5. 재개발사업지구의 지정					○	○
도시정 비 2 계	1. 도시정비 정돈	1. 도시정비정돈 장, 단기계획 2. 도시정비정돈 추진계획 3. 도시정비정돈 추진실적 심사분석 및 평가					○	○
도시정 비 3 계	1. 도시 계획 재개발사업	1. 지구지정된 지역의 세분 화 계획 2. 재개발신규지구지정에 따른 조정 및 기술조사 3. 재개발실시계획 조정					○	○

마. 건축지도과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건 축 행정계	1. 일반행정	1. 건축사사무소등록 2. 건축사지도감독 3. 건축사등록사항 변경신고 4. 실수요자증명 5. 건축허가사실증명 6. 건축물검사필증교부 사실 증명 7.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			
건 축 계획계	1. 미관심의 및건축계획	1.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 의 미관에 관한 통제외지도 2. 특정가구정비지구내 건축 계획의 수립 3. 건축법 및 관계규정의 정비 4. 기타 건축물의 미관에 관한 사항 5. 건축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		
건축지 도1계	1. 건축허가 및준공검사 건축주명의 변경승인	1. 1종미관지구내주요지역 2. 기타지역 ○연면적이 10,000㎡이상 ○연면적이 3,000㎡이상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 연면적이 3,000 ㎡ 미만 (실제변경에 의한 건축 허가준공검사포함) 3. 건축허가 연기승인 4. 건축허가신청서 보완 5. 건축주명의변경승인 6. 건축물의구조 및 기술에 관한사항 7. 건축계획의 수립 8. 구 출장소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				○		
	2. 용벽석축	1. 용벽석축에 관한 사항				○		
지도 2계	1. 건축허가 및준공검사 건축주명의 변경승인	1. 1종미관지구내 주요지역 2. 기타지역 ○ 연면적 10,000 ㎡ 이상 ○ 연면적 3,000 ㎡ 이상 ○ 연면적 3,000 ㎡ 미만 (실제변경에 의한 건축 허가준공검사포함) 3. 건축허가연기승인 4. 건축허가신청서보완 5. 건축주 명의변경 승인				○	○	○

계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재권자					협조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6. 건축물의 구조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2. 위법건축물	1. 위법건축에 관한 사항 2. 옥상무허가건물에 관한 사항 3. 옥상안테나정비에 관한사항				○ ○ ○			
13. 주 택 국									
가. 주택행정과									
계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협조처
주 택 행정계	1. 주택행정 업무	1. 주택통제조사와 집계보고 2. 주택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의 건의 3. 주택관계조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요구 4. 민간주택전립의 지도계몽 5. 국민(민영)주택건설사업 승인  6. 국민주택주요구조부 원자재생산업면허 7. 주택자문위원회 회운영				○ ○ ○ ○ ○	○ ○		건축지도과 구획정리과 도시계획과 소방본부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기 획 계	1. 기본운영 계획 및 예산 조정	1. 중장기 계획의 확정 2. 국내 기본운영 계획의 조정 3. 국내 예산의 조정 편성 4. 국내 예산의 사용 통제 5. 국내 기본운영 계획의 심사 분석				○ ○ ○ ○		○
용 지 계	1. 재개발사업에 대한 보상	1. 지장물 이전 보상금 집행 2. 토지 보상금 재심 결정 3. 토지 보상금 재감정 결정 4. 보상금 재결 신청 5. 보상금 사건 확인 6. 보상금 지급 명령				○ ○ ○ ○ ○ ○		○
	2. 관계업무	1. 분할 신고 처리 2.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명의 변경 3. 용지매수에 대한 분할 추량 의뢰 4. 등기 촉탁 의뢰 5. 수용 토지 환매 6. 토지가격 감정 의뢰				○ ○ ○ ○ ○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7. 토지사용 승락			○			
		8. 매도증서 및 위임장발부			○			
		9. 제증명발급			○			
		10. 재산취득및 매각에 관한 방침결정					○	
		11. 기정방침에 의한 재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체결						
		가. 1건당 1,000 평이상의 매각					○	
		나. 1건당 500 평이상의 매각					○	
		다. 1건당 100 평이상의 매각				○		
		라. 1건당 100 평미만의 매각			○			
		12. 매각자산의 증감평조정			○			
		13. 지적도 및 임야도 토지 대장등본교부및열람신청			○			
		14. 등기부교부및 열람신청			○			

1976  
34116

나. 주택관리과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주택관리계	1. 주택관리	1. 입주자선정 (분양, 임대) 2. 주택의 분양및임주계약체결 3. 주택관리의 지도감독 4. 입주주택의 명의변경						○
	2. 분양금징수	1. 시영주택의 분양금, 임대료, 사용료 기타 납입금의 세입징수결정과 감액및환부 2. 세입금 수입보고 3. 체납금 납입촉탁및 최고 4. 과년도 징수포상에 대한 방침결정 5. 보상금 지급			○			○
보수계	1. 시영주택보수	1. 시영주택보수 계획수립 2. 시영주택 보수계획을 위한 자료조사 3. 시영주택 보수시공 4. 시영주택 보수감독				○		○
	2. 시영주택설비관리	1. 시영주택의 설비보수계획 수립 2. 시영주택설비보수 계획을 위한 자료조사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체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3. 시영주택의 설비보수시공 4. 시영주택설비보수 감독 5. 시영주택의 안전진단 계획수립			○			○	
다. 주택정비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체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정 비 계	1. 무허가 건물철거	1. 기존무허가 건물정리 기본 지침결정 2. 현금보조 철거계획 가. 50 동 이상 나. 50 동 미만 3. 철거이주 정작계획 4. 기존무허가 건물이동 5. 무허가건물정리 통계보고 6. 기존무허가건물 가수용						○	
	2. 초가지붕 개량및주요 간선도로변 정화	1. 초가지붕 개량계획량보고 2. 월말 실적보고 3. 읍자금및 미화단장 보조금 배정				○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3. 추진허가	1. 비주거용 건물 추진허가 승인 2. 월말 실적보고		○			○	
단 속 계	1.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1.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2.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 처리 3. 점검순찰반 운영 4. 항측에 의한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지시 및 종결처리			○	○		
항 측 계	1. 항공사진 촬영 및 관독	1. 항측도의 다목적 활용계획 및 보급 2. 항공사진 촬영에 따른 지상물체 관독 3. 항공촬영 비행승인 및 연기승인 협조 4. 항공사진대여 및 수불관리 5. 항측도 및 약식 현황도 수불관리			○	○	○	
라. 주택 개 량 과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관 리 계	주택 개 량 재개발사업	1. 재개발사업시행계획 및 추진방침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2. 심의회 개편 3. 임시이주지 승인 4. 국민여론및 동향처리및보고 5. 공사감독관 임명 6. 기허 방침결정된 경미한 사항처리 및 보고 7. 민간인 주택재개발 사업의 행정지원과 지도감독 8. 관급자재 수급 9. 공사용관급 자재입체사용 10. 공사기간 연기원 승인				○				
개량 1, 2 계공통	주택 개량 재개발사업	1. 도시계획의 결정신청 2.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3. 재개발사업지구지정신청 4. 재개발사업실시계획 공람 공고 5. 재개발사업 도시계획결정 고시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6. 관리처분 계획공람 7. 관리처분 계획인가 8. 건축계획 승인신청 9. 인가지역내사업계획 변경 10. 지적고시 및 변경 11. 환지저시측량및 필증발급 12. 대위신고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7. 조합의장단 입후보등록 8. 조합지도 감독 9. 조합업무 감시 10. 각종 행정지시				○ ○  ○		
	3. 운송사업 체지도감독	1. 운송사업체 지도감독 2. 운송사업체 경영실태조사 3. 운송사업체 행정지시			○ ○ ○			
	4. 인 가	1. 운송사업 운임요금인가 2. 주차장 및 차고인가 3. 운송부대시설인가 4.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인가				○ ○  ○	○	
	5. 기 타	1. 수도행정자문위원회 교통분 과위원회 운영 2. 운송동원 계획수립 시행 3. 노선업종 차량증차 배정			○		○ ○	
운 수 운영계	1. 개선명령	1. 노선개선 2. 운수사업계획의 일부 개선사항				○ ○		
	2. 인 가	1.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및 인 허가 2. 운송사업계획 변경 (증차, 감 차) 3. 운송사업의 휴지 및 폐지 4. 운송사업 개시 기일연기 5. 고속 및 시외버스 정류장 사업 면허설치인가				○ ○ ○ ○	○ ○ ○	

계 별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6. 고속 및 시외버스 정류장 공사 시행인가 7. 고속 및 시외버스 정류장 공사사용 약관인가 8. 고속 및 시외버스 정류장 사용요금 인가 9. 고속 및 시외버스 정류장 이용규정인가					○	
	3. 신 고	1. 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대차 폐차) 2. 상호, 대표자 변경 신고 3. 주사무소 변경신고 4. 운송사업 개시신고 5. 기타 신고사항		○				
	4. 기 타	1. 정류소 신설 2. 정류소 조정					○	

다. 운수 3 과

계 별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등록 계	1. 민원처리	1. 자동차 계속검사 연기허가 2. 자동차 말소등록 3. 자동차검사증 재교부 4. 자동차 이전등록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5. 자동차등록관 (전출)	○					
		6. 자동차등록이관 검사증개서	○					
		7. 자동차 신규검사	○					
		8. 원동기및 차대각자신고번호	○					
		9.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10. 자동차 신규등록	○					
		11. 이륜소형 자동차신고	○					
		12. 자동차 수입신고	○					
		13. 자동차검사증 기재사항 변경	○					
		14. 예비검사증에 기한 검사증 교부	○					
		15. 자동차 신규등록 (제작 및 조립차)	○					
		16. 자동차번호표 재교부	○					
		17. 추레라 부착신고	○					
		18. 자동차 저당권 설정및 말소등록	○					
		19. 자동차관계 제증명	○					
		20.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교부	○					
		2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					
		22. 자동차 신규등록용 등 (초)본 교부	○					
		23. 자동차변경 등록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4. 자동차구조변경 사전승인 25. 자동차부경등록 (주소, 상호) 26. 기관계 사용증명 27. 타관할 검사의뢰및 회시 28. 자동차등록이관 및 회시 29. 자동차소유자 확인	○							
15. 건 설 국										
나. 시설관리과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협 조 처	
공지관리계	1. 공지관리	12. 하천구거용도폐지				○				
라. 도로보수과										
도로관리계	2. 굴착사항	1. 도로폭 15미터이상연장 500미터이상의 포장도로 굴착에 관한사항 2. 도로폭 15미터이상연장 200미터이상의 포장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미한 포장도로 굴착 및 복구지시에 관한사항					○			
마. 하 수 과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협 조 처	
관 리 계	1. 계획수립 2. 사업소지도 감	1. 하수도사업의 기본계획수립및시행계획 1. 종합중말처리사업소 지도감독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과 정 계	1.세외수입	1. 하수도관계 부담금 기타의 세외수입조정결의 및 장수계획수립 2. 하수도사용료 조정계획 및 장수계획수립과 정산 3. 재심 신청 처리					○	
시 설 계	1.계 획	1.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수립						○
보 수 계	1.하수도 유지관리	1. 하수도 구조물 개수사업 계획 및 시공 2. 도시계획 실시인가			○			○
설 비 계	1.유수지 유지관리	1. 내수침수 예방종합대책수립 2. 유수지 기계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지도감독				○		○

16. 수 도 국

나. 경 리 과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경 리 계	3. 현계표	5. 월별자금 집행계획 6. 자금교부 및 지출			○			

다. 기 전 과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기 계 계	1.차량관리	4. 급수자재 구매할당				○		

111  
- 44

다. 급 수 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부 시 장	소 장	
급수장치계	1. 공 사	1. 상수도기술자 자격시험관리				○		

서울특별시 보전소 위임전결 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76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 서울특별시훈령제 449 호

서울특별시 보전소 위임  
전결 규정중개정

서울특별시 보전소 위임전결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전결 구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1. 공 통 사 항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사 무 장	과 장	소 장	
	복 무	1. 출장명령 및 복명서처리 가. 사무장, 과장의 관내 나. 계장이하의 관내 2. 조퇴, 외출의 허가 및 특근명령 가. 사무장, 과장 나. 계장이하 3. 연가 및 휴가					○	
							○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당자	계장	사무장	과장	소장		
	일반사무	1. 소속직원의 사부분장 2.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사 보고 통지 조부 및 독촉 3. 주관사항에 대한 관계자 소환 및 서류제출 요구 4. 주요업무 및 시책에 따른 자료제출 5. 사무인계인수 (사무장, 과장)			○	○			
	상 혼	1. 소속직원의 표창내신					○		
	민 원	1. 각종 공부의 정리 2. 민원서류의 이송, 보완통지 및 결과의 통보 3. 청원, 진정 및 건의서처리 4. 경미한 청원, 진정 및 건 의서 처리 5.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통보, 기각처리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검열 6. 각종행정처분 및 허가의취소		○	○		○		
	기 타	1. 물품의 배정 2.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계세 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경비의 집행			○	○			

46

2. 사무장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달 당 자	계 장	사 무 장	과 장	소 장	
사무장	인 사	1. 소속직원의 소내 전보					○	
		2. 소속직원의 전입전출 내신					○	
		3. 호봉 승급			○			
		4. 인사에 관한 제보고 및 조회			○			
부 무		1. 청중 단속사항			○			
		2. 보안관리			○			
		3. 당숙직 근무명령 및 일지			○			
회 계		1. 세입, 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				○		
일반서무		1. 보건소지소의 감독사항					○	
		2. 공의임명					○	
		3. 출생, 사망, 질병 기타 보건통계					○	
		4. 직원의 신분증 발급			○			
		5. 민원안내 및 상담			○			
		6. 관인관수			○			
		7. 문서접수 및 분류			○			
		8. 문서통계 및 발송			○			
		9. 문서처리지연자 조치			○			
		10. 민원서류 처리지연통보			○			
		11. 민원신고센터 운영			○			
민 원		1. 보건증 발급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사 무 장	과 장	소 장	
		2. 보건증 재발급 3. 건강진단서 발급 4. 건강진단서 재발급 5. 결핵진단서 발급			○ ○ ○ ○			

3. 보건지도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무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사 무 장	과 장	소 장	
보건지도계	보건일반	1. 보건에 관한 계몽교육 및 선전 2. 사업장종업원의 건강관리 및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 3.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4. 주민보건에 관한 사항 5. 임신부의 등록 및 유아의 건강관리 6. 구강위생 7.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연구 8. 시민영양개선의 지도와 식생활의 지도				○ ○ ○ ○ ○ ○ ○ ○		

48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당자	계장	사무장	과장	소장	
가족계획계	가족계획	1. 가족계획에 관한 등록 계 몽선전지도 2. 정관 및 루우프시술 의뢰 서 발급 3. 기타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	
의약계	의약일반	1. 의료기관 지도단속 2. 약업계에 관한 지도단속 3. 마약사범 단속 4. 의료업자 마약구입 지도 5. 기타 의료 및 약무에 관 한 사항					○ ○ ○ ○ ○	
	의약관계 민원	1. 약국(의료용구,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 약국제제의 제조업 독극물판매업) 등록증 갱신신청 2.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3. 약국명칭변경 등록 4. 약국관리 약사 승인 신청 5. 약국(의약품·도매상) 허가 관리약사 변경신고 6. 약국관리약사 폐지신고 7. 의약품 판매업 허가 사항 변경신고	○				○ ○ ○ ○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당자	계장	사무장	과장	소장	
		8.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갱신신청		○				
		9. 의료기관 휴업, 폐업신고		○				
		10.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11. 의료업자사망(실종) 신고		○				
		12. 마약취급자(의료업자, 관리 자) 면허등록 사항 변경					○	
		13. 마약취급자 업무폐지신고					○	
		14. 마약취급자 면허증 재교 부 신청					○	
		15. 마약구입서(판매시) 용지 배부		○				
		16. 마약취급자 면허신청					○	
		17. 독극물 관리자(판매자) 변경 신고					○	
		18. 독극물 판매업 등록증(허가 증) 재교부 신청					○	
		19. 독극물(판매업, 제조업, 수 출입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				
		20. 독극물 판매업 등록(허가) 사항에 변경 신청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담 자	계 장	사무 장	과 장	
		21. 조산소 휴업, 폐업신고		○			
		22. 시술소(접골사, 침구사) 폐 지 신고		○			
		23. 습관성의약품 취급자 지정 신청					○
		24. 습관성의약품 치급자 지정 사항 변경				○	
		25. 습관성의약품 취급자 지정 폐업 신고		○			
		26. 습관성의약품 지정서 재교 부 신청		○			
		27. 의료기관 개설 신고					○
		28.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 신고				○	
		29. 의료기관 재개업신고				○	
		30.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신고					○
		31. 조산소 개업신고					○
		32. 조산소 재개업신고				○	
		33. 시술소(안마, 접골, 침구) 개설 신고					○
		34. 시술소(안마, 접골, 침구) 이전신고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사 무 장	과 장	소 장	
		35. 약국 개설등록 36. 약국개설(약종상, 한약종상) 이전신고 37. 약종상(한약, 매약) 허가 38. 약종상(한약, 매약)영업장소이전허가 39. 의약품 도매상 허가 40. 독극물 판매업 등록허가					○	
	약 무	1. 마약취급 자격상실자 소지마약 신고처리 2. 마약양도, 양수 승인 산정처리 3. 사고 마약폐지 허가 4. 습관성 의약품 양도, 양수 승인 5. 습관성 의약품 사고 발생 6. 습관성 의약품 취급자 행정처분 7. 마약취급 면허 유효기간 갱신 신청 8. 마약재고량 증명				○	○	○
4. 방 역 과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사 무 장	과 장	소 장	
방역1계	방 역	1. 결핵, 성병, 나병등 만성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2. 기생충 관리 3. 엑스선촬영 및 검사실의 운영 4. 부랑 나환자 단속 5. 병리 시험 검사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업조처
			담 당 자	계 장	사 무 장	과 장	소 장	
방역2계	방역민원 방역	1. 엑스선 촬영의뢰 1. 방역작업 실시 2. 예방접종 3. 전염병의 역학조사 처리 4. 우물소독 및 검사에 관 한사항 5. 공인에방접종소의 업무지도 6. 전염병환자사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특수지방병의 연구 및 급성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사항		○				

서울특별시구 및 출장소위임전결규  
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 6. 30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 서울특별시훈령제 450 호  
서울특별시구 및 출장소위임  
전결규정중개정  
서울특별시 구 및 출장소위임전결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4. 산업과 상공계증명처리란중  
"8"을 삭제하고 "9"내지 "31"을

"8" 내지 "30"으로하며 종전의 "19"  
를 별지와 같이하고, 농정계란 다음  
에 환경계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표중 6. 세무제 1.과 직세제 1, 2 계제  
신고현년도 부과징수란중 "18"내지  
"20"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직  
세제 1, 2 계란 다음에 조사계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중 7. 세무제 2 과 세무제 1, 2 계  
제신고현년도 부과징수란중 "15" 내  
지 "17"을 별지와 같이하고,

111  
- 53

세무제 1, 2 계란 다음에 세외수입계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청소과 작업 2계 분뇨수거란중  
"1", "2", "6", "9", "10"을  
각각 삭제하고, "3"내지"5"를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4. 산 업 과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구 청 장	
상 공	증명처리	18. 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업의 변경허가 처리			○			
환 경	허 가	1. 배출시설 설치허가 2. 배출시설 설치허가 진달 3. 배출시설 사용개시 신고			○		○ ○	
	지도단속	1. 공해검사 지시 2. 공해검사 결과확인 3. 공해업소 행정처분 4. 공해업소 행정처분 진달 5. 개선계획서 징취 6. 개선기간 연기 7. 무허가업소 적발 및 조치 8. 공해업무에 관한 지도 및 통계제출			○ ○ ○ ○ ○ ○ ○	○ ○		

6. 세 무 제 1 과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구 청 장	협조처
직 세 1. 2.	제신고현년 도부과징수	18. 1 전당세액 100 만원이상의 감액처리					○	
		19. 1 전당세액 50 만원 이상의 감액처리				○		
		20. 1 전당 세액 50 만원 미만의 감액처리			○			
조 사	세무조사	1.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2. 재조사 청구진달 3. 법인실사 관계통계 및 보고				○		
7. 세 무 제 2 과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구 청 장	협조처
세무 1. 2	제신고현 년도부과 징수	15. 1 전당 세액 100 만원 이 상의 감액처리					○	
		16. 1 전당 세액 50 만원 이상의 감액처리				○		
		17. 1 전당 세액 50 만원 미만 의 감액처리			○			
세외수입 총 팔	세외수입	1. 세외수입 과징업무 분석평가 (과별, 과목별)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구 청 장	
		2. 세외수입에 관한 업무 합의 3. 과년도 세외수입의 징수 및 정리지도			○			
	도로수익자 부담금과징	1.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조정 결의 2. 도로수익자 부담금 환불 결의 3. 도로수익자 부담금 체납금 징수 및 정리					○	
							○	
								○
								○
9. 청 소 과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구 청 장	
위생설비	정화조업무	1. 정화조 준공신고의 처리			○			
	변소개량	1. 변소시설의 개수 연기 신청			○			
		2. 변소시설의 개수 명령			○			
		3. 변소시설의 개수 신고			○			
공중변소관리	1. 공중변소의 관리			○				

11/56

서울특별시 축산물위생검사소 위임  
전결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 6. 30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 서울특별시훈령제 451호

서울특별시축산물위생검사소  
위임전결 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검사소장 (이하 "소장"이라한  
다)의 결재사항과 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과장,  
계장 및 담당자에게 전결하도록하  
여 책임과 권한에 의한 결재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소장, 과장, 계장 및  
담당자 (이하 "전결권자"라 한다)  
의 결재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 전결방법 ) ①전결권자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별표의 위임전

결 구분에 의하여 각각 전결한다.  
다만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  
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  
항으로 그 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  
한 사항은 전함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규정에 규정된 결재구분에 의  
하여 이미 결재된 사항으로서 이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  
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 4 조 ( 협조 ) 전결사항중 다른과, 계와  
관련있는 사항은 반드시 당해과,  
계의 협조를 얻어야하며 그 의견이  
상이하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  
아야 한다.

제 5 조 ( 결재위반여부확인 ) 문서 통제관은  
이규정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여부  
와 협조부서의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임 전 결 구 분

1. 각과 공통사항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재권자				합 조 처
			담당자	계장	과장	소장	
공 동	복 무	1. 출장명령 및 복명서처리 (1) 계장 과장 (2) 일반 직원 2. 공가조퇴, 외출, 특근명령 (1) 계장, 과장 (2) 일반 직원				○	
	기 획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심사분석의 자료제출 3. 중요업무 및 시책에 따른 자료제출 4. 소관업무의 통계처리 (1) 중 요 통 계 (2) 경미한 통계				○	
	민 원	1. 제증명 발급				○	
	예산회계	1. 예산편성 자료제출 2. 예산배정 요구 3. 공사의 집행 4. 물품구매 및 운반				○	

77 / 58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5. 봉급기타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결의서 6. 수입인지 및 증지의 수불 7. 물품의 청구와 수리 8. 시외전화의 사용허가 9. 세입의조정 및 징수결의 10. 세외수입금이 징수 결의				○
	일 반	1. 차량배차 신청 및 허가 2. 소속공무원의 사무분장 3. 사무인계 인수 (1) 과 장 급 (2) 계 장 급 (3) 일반직원 4. 정기보고(주, 월, 기, 연보) 5. 1 회보고 승인 6. 소관일일업무일지 처리 7. 상급기관에 대한 각종보고 8. 민원처리부 검열 9. 우표 수불				○ ○ ○ ○ ○ ○ ○ ○ ○
	민원서류	1. 부신을 요하는 소원 청원서 또는 검의서의 전달 2. 민원서류 처리상황의 검열				○ ○
	재산관리	1. 재산의 폐기 2. 차량관리 3. 물품의매각 차입 및 대부				○ ○ ○

2. 감 사 과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재권자			
			남 당 자	계 장	과 장	소 장
			협 조 처			
사무계	1. 인 사	1. 소속직원의 소내 전보 2. 소속 직원의 전입전출 내신 3. 인사에 관한 제보고 및 조회				○ ○
	2. 복 무	1. 청중 단속사항 2. 보 안 관 리 3. 당숙직 근무명령 및 일지 처리				○ ○ ○
	3. 회 계	1. 세입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 2. 물품 출납관계				○ ○
	4. 일반서무	1. 관인 관수 및 문서 통제 2. 문 서 수 발		○		
감사1계	도축검 사	도축검사 보고(월보) 도축 검사일지 도축 현황 도축검사 신청서 도축 검사대장	○ ○			○ ○ ○
감사2계	축산물검사	1. 우유 검사보고 2. 유제품 생산소비 상황 보고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재권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소 장	
감사 2계		3. 축산물가공품 검사보고				○	
		4. 지전소비 상황보고				○	
		5. 지전 검사의뢰			○		
		6. 유제품 검사 결과통지			○		
		7. 유제품 검사의뢰			○		
		8. 공휴일자제 검사보고				○	
		9. 지전 검사의뢰 결과통지				○	
		10. 도전 검사신청	○				
		11. 도계 검사신청	○				
		12. 불합격 축산물 처리				○	

3. 시험과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재권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소 장	
시험계	축산물검사	1. 시유 검사성적표				○	
		2. 유가공품 검사성적표				○	
		3. 유가공품 검사성적표				○	
		4. 유가공품 검사 결과통보			○		
		5. 유가공품 "			○		
		6. 공정시험 결과통보			○		
		7. 공정시험 성적서 통보			○		
		8. 시험재료 수불부			○		
방역계	가축전염병 검진	1. 병성감정일지 (시험일지)				○	
		2. 병성감정 신청서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3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일부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선 정비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을 신설, 일부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 73.  
4 . 4 ) 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6. 21

서울특별시장

시설신설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연장	기	집	종	집	비	고
기정	소로	3류		6 m	60m	영등포오류동	41-3	오류동	12 - 1		
변경	"	"		6 m	80m	영등포구오류동	40-4	"	13-54		관습상도로 위치 변경
신설	"	"		6 m	14m	영등포화곡동	109-50	화곡동	746-6		
신설	"	"		8 m	50m	"	110-6	화곡동	98-25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38 호

도시 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주차  
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결정 및 지  
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73. 4. 4)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

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  
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6. 21

서울특별시장

가. 주차장 결정조서					
위	치	면	적	비	고
성동구	마장동 781 - 2	1,874	㎡ (569 평)	대	홍 교 통
마포구	성산동 51-3,12	683	㎡ (207 평)	진	화 운 수
영등포구	온수동 58	1,858	㎡ (563 평)	세	풍 운 수
영등포구	독산동 290-74,10	1,521	㎡ (461 평)	남	부 운 수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3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및하수도) 결정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하수도) 을 다음과 같이 결정, 일  
부변경하고 지적승인 하엿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대통령  
령제 7754 호 (75.8.22) 의 권한위임사

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게 보이게 한다.

1976. 6. 21

서울특별시장

도로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정	소로	1		10m	130 m	광	1	광	로 7		
폐지	"	1		"	"	"	"	"	"	세종특가구내	
기정	"	3		6m	385X2일	도봉구	미아동 775	미아동	867구거	도로폐지	
변경	"	2		8m	385	"	"	"	"	구거복개위치로	
기정	"	3		6m	100	중로구	명륜 1가 152-2	명륜 1가	10-43	소로위치변경	
변경	"	2		8m	180	"	"	와룡동	1-205	재개발지	구획

하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명칭	구분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하수도	암거	8 m	385 m	도봉구	미아동 775	미아동	867구거	복개	후도로개설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40 호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용도  
지구변경지적 승인

1. 건설부고시제 82 호 (76.6.11) 로  
일부변경결정 고시된 용도지역 및 지  
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전  
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각각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게 보이게 한다.

1976. 6. 23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지적 승인조서

변 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강남구 명일동 산 34 (108)	3,035 ㎡	실명상이용사촌
주거전용지역 → 주거지역	성동구 군자동 송정동 일부	104,190 ㎡	수도사대

나.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지적 승인조서

변 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풍치지구 변경 (해제)	성동구 군자동 송정동 일부	104,190 ㎡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41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광장)  
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82 호 (76.6.11) 로 시설 결정된 당시 관내 도시 계획시설 (도로·광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서울 시 고시 제 3 호 (69.1.18)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6. 23  
서울특별시장

○ 도로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중로	1	121	20m	3,750m	내발산동 중로 1 류 122 호 방화동	노선
변경	"	"	121	"	3,100m	내발산동 방화동 650-1	일부
신설	"	"	155	"	1,200m	공항동 개화동	축소
신설	"	"	156	"	190m	개화동 632 시계	
기정	소로	2	8m	50m	50m	방화동 620-1 방화동 613-16	노선
변경	"	"	"	50m	50m	방화동 635-5	일부
폐지	"	"	"	140m	140m	방화동 635-4 방화동 638	변경

○ 광장 지적 승인

구분	시설종류	번호	광 장 명	위 치	면 적 (㎡)
신설	교통광장	63	김포공항앞광장	영등포구 방화동 621	6,000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42 호

1976 년도 제 2 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6 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 2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41 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6. 6. 18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회 계 별	예 산 액
총 계	212,281,042 천원
일 반 회 계	129,047,295 "
특 별 회 계	83,233,747 "
주 택 비 특 별 회 계	23,108,000 "
토 지 구 획 특 별 회 계	11,711,830 "
하 수 처 리 특 별 회 계	2,488,333 "
건 설 자 재 특 별 회 계	1,487,300 "
유 료 도 로 특 별 회 계	1,323,695 "
시 민 회 관 특 별 회 계	4,400,046 "
청 소 비 특 별 회 계	6,431,472 "
재 개 발 특 별 회 계	1,787,000 "
재 해 구 호 특 별 회 계	159,443 "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24,272,591 "
지 하 철 특 별 회 계	6,064,037 "

◎ 서울특별시고시제 143 호

도시계획사업 (재개발사업) 시행허가

- 1. 건설부고시 제 46 호 ( 76.4.7 ) 와 서울시고시 제 83 호 ( 76.4.19 ) 에 의거 재개발구역으로 결정 및 지적 고시된 장교 재개발 제 7지구

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법 시행령 제 25 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76. 6. 22

서울특별시장

2. 시행내용

지구명	위치	지정면적	시행면적	시행자
장교재개발 제 7지구	중구수표동 47-6 대 47-7 대 59 대	1,196 (361.79평)	1,198 (362.5평)	시내성동구흥익동292 김익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39 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 1. 당시가 시행중에 있는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일부 환지 예정지 지정지에 대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

자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2. 환지계획 변경 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6. 6. 22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40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 1. 당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영동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일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2. 환지계획 변경 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6 . 6. 22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41호

자동차등록검인 실시공고

도로운송차량법 제 15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동차등록 검인을 실시함.

1976 . 6. .

서울특별시장

- 1. 검인대상차량 : 사업용, 비사업용 (관용포함) 전차량 - 2륜차는 제외
- 2. 검인기간 : 검인일정 (별첨)
- 3. 검인장소 : 해당지구 검사장
  -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와 자동차검사증을 제시하여 기간내 검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인을 받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는 도로운송차량법 제 86 조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생략)

자 동 차 등 록 검 인 실 시 제 획 서

1. 근 기: 도로운송차량법 제 15 조

2. 목 적

가. 무적차량의 색출

나. 자동차등록원부와의 동일성 여부 확인

( 차대 , 원동기 )

다. 차종별 용도별 분류의 적정여부

라. 번호판 및 번호등의 불량 또는 훼손 여부

3. 대상차량

전차량 ( 단 , 2륜차 제외 )

4. 검인기간

별 칩

5. 검인장소

자동차검사장 ( 10 개 지구 )

6. 검인방법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검사기록부와 대조하여 검인

7. 검사반의 편성

시공무원 , 경찰공무원 , 검사원 1 개 조

8. 행정사항

가. 소요예산 : 1,316,000 원

예산내역 : 별 칩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추가

예산에 확보코자 함.

나. 지출과목

공고료 : 관광운수비, 관광운수관리, 운수행정비 및 안전관리수수료

수용비 : 관광운수비, 관광운수관리, 운수행정등록계운영, 수용비

급식비 : 행정비, 기획관리에산 및 외자관리 예산운영 급양비

다. 신규 및 계속검사와 병행검인

1) 검인기간중 신규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실에서 검인표를 교부하고

2) 계속검사 등 자동차 검사시에 등록 검인을 병행한다.

라. 이전등록확인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소지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 12 조에 의한 이전등록의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마. 관할구역외에서의 검인 억제

도로운송차량법 제 16 조에 의한 관할구역외에서의 검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바. 업무의 위임

당시 형편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검사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점 인 일 정					
차 종	용 도	번호표기호	실 시 기 간	실시일수	비 고
승 용	(관용) 포함	0 가	7. 1	1	
		1 가	7. 2 ~ 7. 7	5	
		1 나	7. 8 ~ 7.13	5	
		1 다	7.14 ~ 7.20	5	
		1 라	7.21 ~ 7.26	5	
		1 마	7.27 ~ 8. 2	6	
	사업용		8. 3 ~ 8.11	8	
화 물 특 수 차 량	(관용) 포함	7 가	8.12 ~ 8.13	2	
		7 나	8.14 ~ 8.16	2	
		7 다	8.17 ~ 8.18	2	
		7 라	8.19 ~ 8.20	2	
		7 마	8.21 ~ 8.23	2	
		9 가	8.24 ~ 8.26	3	
	사업용		8.27 ~ 9. 9	7	
승 합	비사업용 (관용) 포함		9.10	1	
합	사업용		9.11 ~ 9.17	6	
※ 사업용 차량의 세부일정을 추가공보					

사 령

◎1976.6.22

감사관실 행정사무관 전 명 호  
서기관에 임함.

감사관실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행정사무관 김 승 결  
민 방 위 국 서기관에 임함.

성동구민방위국장에 보함.

성 북 구 행정사무관 허 재 구  
민 방 위 국 서기관에 임함.

성북구민방위국장에 보함.

도 봉 구 행정사무관 서 정 희  
시 민 생 활 국 서기관에 임함.

도봉구시민생활국장에 보함.

도 민 구 행정사무관 김 치 운  
방 위 국 서기관에 임함.

도봉구민방위국장에 보함.

영 등 포 구 행정사무관 이 상 정  
민 방 위 국 서기관에 임함.

영등포구민방위국장에 보함.

보 건 사 회 국 행정사무관 김 용 아  
아 동 과 서기관에 임함.

보건사회국아동과장에 보함.

마 포 구 지방행정 이 시 응  
주 택 과 사 무 관 행정사무관에 임함.

상공부특허국관리과근무를 명함.

보 건 사 회 국 지방행정 김 원 근  
사 회 과 사 무 관 행정사무관에 임함.

보건사회국사회과근무를 명함.

◎1976.6.21

재 무 국 서 기 관 임 병 도  
관 재 과 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976.6.22

남 부 병 원 지방행정 유 증 원  
지 서 기 관

양 묘 장 직 지방행정 염 수 운  
지 서 기 관

성 북 구 지방행정 안 세 혁  
지 서 기 관

장 남 구 지 부 방 행정 정보 유 희 원  
지 서 기 관

은 명 출 장소 지 부 방 행정 정보 이 춘 우  
지 서 기 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서 대 문 병 원 지방행정 임 완 옥  
주 사 보 용 산 구 근무를 명함.

◎1976.6.23

주 택 정 비 과 지방토목 김 광 개  
기 사 지방토목기과에 임함.

주택정비과항축계장에 보함.

<p>치 수 과 지방토목사 김 석 기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치수과치수계장에 포함. 종 로 구 지방토목사 김 봉 기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종로구군무를 명함. 중 구 지방토목사 김 정 근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중구군무를 명함. 도 봉 구 지방토목사 김 영 호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서대문구군무를 명함. 주 택 전 설 지방토목사 양 규 승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주택건설사업소군무를 명함. 하 수 과 지방토목사 신 동 열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도봉구군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사 우 상 응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영등포구군무를 명함. 도시계획과 지방토목사 정 한 영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용산구군무를 명함.</p>	<p>급 수 과 지방토목사 임 종 만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급수과누수방지계장에 포함. 도 시 가 스 과 지방토목사 권 승 균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도봉구군무를 명함. 토 목 시 험 소 지방토목사 한 규 영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토목시험소물리과장에 포함. 건 축 지 도 과 지방토목사 최 광 수 지방건축기좌에 임함. 건축지도과지도1계장에 포함. 건 축 지 도 과 지방건축사 신 언 필 지방건축기좌에 임함. 건축지도과건축계획계장에 포함. 시 민 회 관 지방건축사 허 중 오 지방건축기좌에 임함. 시민회관기술과장에 포함. 은 명 출 장 소 지방행정관 박 응 용 토목시험소서무과장에 포함. 관 악 구 지방수산과 박 주 호 농축과농수산계장에 포함. 농 축 과 지방행정관 황 호 완 관악구군무를 명함.</p>
---	--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사무관 양 석 용 도시가스과 도시가스계장에 포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박 화 수 마포구근무를 명함. 도로보수과 토목기좌 김 재 석		도로보수과 도로보수계장직무대리 를 명함. 용 산 구 지방토목과 전 완 규 도로보수과 도로관리계장직무대리 를 명함.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이 종 국	은 명 출 장 소	동 대 문 구	지방행정주사
한 경 석	강 남 구	천 호 출 장 소	“
정 준 상	강 동 대 문 구	강 남 구	“
이 규 숙	마 포 구	용 산 구	“
김 윤 환	마 용 산 구	종 로 구	“
조 태 응	천 호 출 장 소	운 영 과	“
이 범 대	마 포 구	공 무 원 교 육 원	“
심 재 천	강 성 동 구	성 북 구	“
노 현 택	관 악 구	영 등 포 구	“
이 관 검	관 악 구	종 로 구	“
윤 정 중	용 산 구	도시가스사업소	“
최 춘 길	종 로 구	영 등 포 구	“
이 동 수	양 서 출 장 소	지 하 철 본 부	“
이 경 서	영 등 포 구	도 봉 구	“
안 중 순	도 봉 구	성 북 구	“
김 준 회	서 대 문 구	관 악 구	“
연 영 희	공 무 원 교 육 원	시 정 개 발 담 당 관	“
강 평 우	공 무 원 교 육 원	운 영 과	“
조 두 형	강 남 구	관 악 구	“
유 동 주	재무국관재과장직무대리	공 무 원 교 육 원	지 방 서 기 관
피 상 진	녹지국공원과장직무대리	녹지국조경과	지 방 농 림 기 좌

111  
74

성명	발령사	항	현부서	직, 급
박용환	문화공보실보도계장	지방행정관	문화공보실	지방행정주사
김진국	통계담당관통계조사계장	"	통계담당관	"
강영호	순찰담당관순찰1계장	"	순찰담당관	"
박영찬	민방위과시설계장	"	민방위과	"
조경호	운영과교육훈련계장	"	영등포구	"
손동수	종로구	"	종로구	"
김종경	종로구	"	성북구	"
정태승	중구	"	강남구	"
신금주	동대문구	"	동대문구	"
노홍균	성동구	"	성동구	"
김병관	성동구	"	성동구	"
이서용	성동구	"	마포구	"
함현호	성북구	"	성북구	"
안현용	도봉구	"	도봉구	"
이존상	도봉구	"	도봉구	"
윤인영	서대문구	"	서대문구	"
이석주	마포구	"	마포구	"
박봉식	용산구	"	중구	"
박영걸	영등포구	"	영등포구	"
송두호	관악구	"	관악구	"
박도용	관악구	"	관악구	"
임채주	강남구	"	강남구	"
이종인	강남구	"	강남구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용준	은평출장소	지사	지방행정주사
홍태영	도시가스사업소과장	방무정관	은평출장소
한동완	비상계획보좌관	총무과	비상계획보좌관
김재중	시정개발담당관	새마을지도과	총무과
이현택	주택행정과	주택개량과	새마을지도과
이훈경	운영과	서대문구	주택개량과
옥유영	종로구	통제담당관	운영과
길원남	중구	중구	종로구
황용학	동대문구	동대문구	중구
채승기	동대문구	기획담당관	동대문구
한길수	성동구	천호출장소	동대문구
맹은서	성북구	성북구	성북구
김기창	성북구	성북구	성북구
계타룡	성북구	업무과	성북구
이태원	도봉구	영선과	업무과
마영수	마포구	강남구	영선과
배인환	용산구	총무과	강남구
김완익	영등포구	종로구	총무과
김종기	영등포구	영등포구	종로구
박수철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구
이재효	관악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박형순	관악구	은평출장소	관악구
이종록	강남구	강남구	은평출장소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정태산	천호출장소	지사 <sup>지방행정관</sup> 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유원종	은평출장소	"	"
김순기	은평출장소	"	"
김규원	양서출장소	"	"
장철수	양서출장소	"	"
안의수	양서출장소	"	"
권오호	지하철본부	"	"

비상계획 지방전기 이 재 교  
보좌관실 기원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6.6.24

구획정리과 지방토목 이 효 창  
기사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